

#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70,109,093	23,103,273
일반회계	557,000,000	16,710,000
특별회계	53,799,880	1,613,996
기타특별회계	53,799,880	1,613,996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36,960	28,109
주차장특별회계	313,000	9,3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57,045	61,7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755,490	442,66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34,304	13,029
치수사업특별회계	372,068	11,1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0,000	15,0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3,314,000	999,420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00	30,000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117,013	3,510
기금	159,309,213	4,779,276
재난안전기금	2,404,709	72,141
농어업발전기금	8,808,949	264,268
공무원주거안정기금	990,000	29,700
자활기금	892,612	26,778
식품진흥기금	145,613	4,3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25,481,209	3,764,436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20,257,212	607,716
옥외광고발전기금	85,309	2,559
고향사랑기금	243,600	7,30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500,000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814,50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